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145
----------	------

2019년 12월 16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장
2. 회부일자 : 2019년 10월 22일
3. 상정일자 : 제290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19년 11월 21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1. 제안이유

-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여성관련시설 이용료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등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참조

(2) 입법예고(2019. 9. 25. ~ 10. 15.)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도 첨부 참조

Ⅲ.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1 조례안의 개요

- 동 개정안은 수수료가 없는 소상공인 전용 결제 시스템인 제로페이의 이용활성화를 위해 201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제로페이를 결제시 시립시설의 이용료나 입장료를 감면하기로 했던 것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임.

2 주요사항 검토

□ 제로페이 이용자 감면 사항

-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에 따르면¹⁾,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에 대

1)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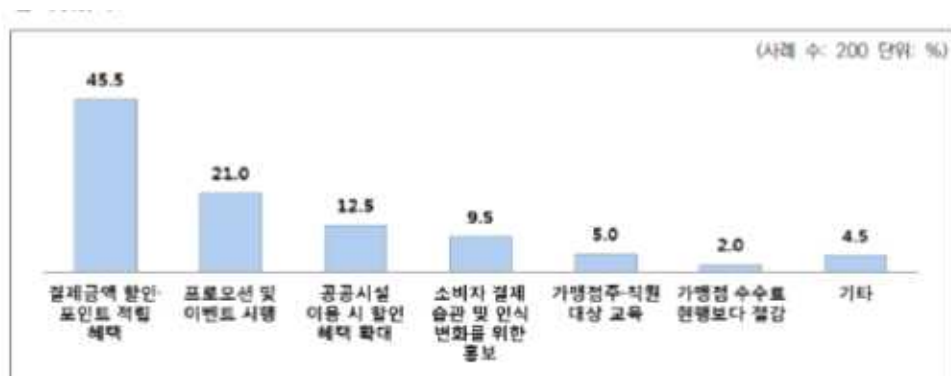
② 사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09. 4. 1.>

한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이처럼 시민의 권리 및 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지난 제296회 임시회(2019.4.30. 본회의 의결)에서 201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립여성발전센터 5개소에서 이용료를 제로페이로 결제하는 시민들에게 이용료의 10%로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음.
- 개정안은 제로페이 결제시 이용료나 입장료의 감면해주는 기한을 2019년 말에서 2020년 말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제로페이의 이용률 제고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시장이 제출한 것임.
- 서울연구원²⁾에 따르면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가 원하는 지원사항 1위는 결제금액 할인 및 포인트 적립 혜택으로 나타난 바, 개정안에 따라 제로페이 결제 시 감면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시민의 제로페이 사용 활성화의 유인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음.

<소비자가 원하는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지원사항>



2) 출처: 「제로페이, 소비자에게 실질 혜택 제공하고 사용처 확대 노력·사용 편의성 증진 필요」
서울연구원, 2019

- 한편, 서울시 제로페이 추진반이 제출한 조례 등에 따른 공공시설의 제로페이 결제실적을 살펴보면, 2019년 8월말까지 104개 시설 총 114,151건의 제로페이 결제가 이루어져 금액으로는 총 5억 원의 할인이 발생하였으며, 시민들의 제로페이 이용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제로페이 결제 및 할인실적>

(단위 : 천건, 백만원)

구분	계		5월		6월		7월		8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전체결제(A)	2,010	28,341	482	7,489	472	6,451	483	7,164	573	7,237
제로페이(B)	114	4,141	28	927	31	832	23	1,036	32	1,346
이용률(B/A)	5.8%	12.4%	5.8%	12.4%	6.7%	12.9%	4.8%	14.5%	5.5%	18.6%
할인금액	500		117		106		120		157	

출처: 서울시 제로페이 추진반, 공공시설 제로페이 할인 연장 추진계획,

- 다만, 동 개정안 대상 시설인 여성발전센터 5개소의 경우, 제로페이 온라인시스템 구축 미비로 인해 제로페이 결제실적의 전무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 개정안에 따른 제로페이 감면 기간의 연장조치가 제로페이 결제 이용활성화를 통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본래 목적에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3 종합 의견

- 동 개정안은 제로페이의 이용활성화를 위해 제로페이 결제시, 시립시설의 이용료나 입장료를 2019년 말까지 감면토록 하던 것을 2020년 말까지 그 기간을 1년 연장하고자 하는 안으로, 제로페이 이용시 할인혜택 제공을 통

해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제로페이 이용률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 다만 금번 개정안에 따른 여성발전센터의 경우, 제로페이 온라인시스템 구축 미비로 인해 제로페이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 방안 마련이라는 조례 개정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는데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임.

여성발전센터 제로페이도입 지연사유 및 향후계획

〈'19. 11. 6. 여성일자리팀〉

여성발전센터 제로페이 온라인 할인제도 도입을 위한 제로페이추진반(금융결제원) 프로그램 제공이 지연됨에 따라 제로페이 온라인시스템 구축기간이 연장되었으며, 제로페이 할인은 '19년 12월 실시할 계획임

□ 추진개요

- 대 상 : 여성발전센터 5개 기관
- 방 법 : 온라인을 통한 제로페이 결제 시 이용료 등 할인(4%)
- 할인기간 : '19.12월
- 추경예산 : 20백만원(여성발전센터 수입보전액) ※ 조례 개정 : '19.5월

□ 지연사유

- 제로페이추진반(금융결제원) 온라인 프로그램 제공 지연으로 여성발전센터 홈페이지 결제시스템 구축이 당초 7월말에서 10월말로 지연됨
 - 금융결제원 프로그램 제공 지연 : '19.4월^{지연} → '19.5월^{지연} → '19.8월말 이후
- ※ 제로페이 도입관련 회의 시 조기제공 요청함(4~5월)

□ 향후계획

- 여성발전센터 수강료 결제는 분기단위로 진행되어 제로페이 결제시스템이 10월말에 구축되어 제로페이 이용할인 실적이 없으며, 실제 이용료 할인은 '19.12월에 실시할 예정임
 - 수강료 결제 : 매분기 전월 수강신청(예. '20년 1분기(1~3월) 수강료 강좌 결제 '19년 12월)
- ※ 현재 제로페이 온라인 시스템 결제는 가능하나 '19년 4분기 수강신청기간이 9월 종료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재적위원 11명, 참석위원 10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45
----------	------

제출년월일 : 2019년 10월 16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 결제시스템(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여성관련시설 이용료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등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2) 입법예고(2019. 9. 25. ~ 10. 15.) 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도 첨부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조례 제7106호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2019년 12월 31”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 제7106호, 2019. 5. 2.></p> <p>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 제19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u>2019년 12월 31</u>까지 효력을 가진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 제7106호, 2019. 5. 2.></p> <p>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 ----- <u>2020년 12월 31일</u>-----.</p>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 결제 할인에 따른 민간위탁시설 수입감소분 손실보전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 감면손실액 산출 = (사업수입×30%(제로페이 이용자))×4%(이용료 감면)
- 한시적 적용 : '20.1~12(12개월)

(단위 : 천원)

구분	사업수익 (18.1~12월)	제로페이 30% 이용시	할인액 4%	비고
금액	2,938,039	881,412	35,256	

4. 작성자

서울특별시 여성정책담당관 김석천 (02-2133-5028)